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2허11481 거절결정(상)

원 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이풍우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중열, 배철훈, 최덕철, 정상균, 홍철의

변론종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2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2. 11. 30. 2012원65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1. 6. 27./ 제45-2011-0002740호
- (2) 구성 : **진미 통닭** (일반상표)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¹⁾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 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
 - (4) 출원인 : 원고

나. 선출원서비스표

- (1) 선출워서비스표 1
 - (가)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 등록번호 : 2010. 9. 16./ 2011. 12. 21./ 제0223408호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

¹⁾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서(갑 제1호증)에는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비직물제 라벨,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종이제 또는 판지제 광고판, 골판지 상자, 접이식 판지제 상자,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종이제 가방 및 포대,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튀긴 고기(통닭에 한함),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통닭전문점 체인업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포함하였으나, 2011. 7. 21.자 보정서를 통하여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비직물제라벨,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종이제 또는 판지제 광고판, 골판지 상자, 접이식 판지제 상자,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종이제 가방 및 포대,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튀긴 고기(통닭에 한함)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에서 삭제하였고, 2011. 9. 29.자 보정서를 통하여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통닭전문점 체인업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에서 삭제하였다.

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 (라)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진미식품
- (2) 선출원서비스표 2
 - (가)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 등록번호 : 2010. 9. 16./ 2011. 12. 21./ 제0223418호



-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 (라)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진미식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11. 6.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
- (2) 특허청 심사관은 2011.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 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3) 원고는 2011. 8. 29. 특허청 심사관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수원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1. 9. 5.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 수원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국적 범위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 (4)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원6659호로 심리하여, 2012. 5. 1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를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주 맛이 좋은"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거나, 상품의 성질 또는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였다.
- (5)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다시 심사하여, 201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타인의 선출원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6) 원고는 2012. 6. 7. 특허청 심사관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출원전 상당기간 사용결과 일정지역에서 수요자가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2. 6. 2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수원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국적범위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선출원서비스표 1, 2와 출처혼동

의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원6574호로 심리하여, 2012. 11.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타인의 선출원서비스표 1, 2와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선출원서비스표 1, 2의 표장 중 '진미', 'JINMI' 부분은 모두 '아주 좋은 맛', '참된 맛'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의 품질을 표시한 것이므로 그자체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선출원서비스표 1, 2는 그 표장 중 ' 부분이 요부이므로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 1, 2와 대비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않는다.
-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진미 등닭**'의 '**진미**' 부분은 '참된 맛, 본래의 맛' 등의 의미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1996.

4. 13.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50번지에서 '진미통닭'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고, 2005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매출이 급성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하여 수원지역은 물론 전국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선출원서비스표 1, 2는 도형인 ' 부분과 문자인 '진미', 'JINMI' 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데, 도형 부분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인 '진미', 'JINMI'에 의하여 호칭, 관념된다. 이사건 출원서비스표 ' 진미 등답''은 한글 4자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결합되어 구성된 문자표장인데, 그 중 '등답''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재료의표시 또는 업종의 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식별력이 있는 '진미'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와 선출원서비스표 1, 2는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진미통닭' 중 '진미' 부분은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 품질,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진미통닭' 중 '진미'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과 거래당자자들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원 지역의 수요자들과 거래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뿐이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과 거래당사자들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

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편의상 선출원서비스표 2와 대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진미 등닭'과 선출원서비스표 2 '진미'는 '진미'라는 한글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위 '진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 색채와 문자들이 서로 다르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이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진미롱닭**'은 한글 4자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결합되어 구성된 문자서비스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롱닭**'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하여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전혀 없다. 반면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진미**' 부분은 '眞味(참맛)', '珍味(음식의 아주 좋은 맛)', '眞美(참된 아름다움)', '陳米(묵은 쌀)'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제조업체의 상호(진미식품 등), 행정동의 명칭(구미시 진미동), 복숭아 품종명 등으로 사용되는 등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이나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정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진미' 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는 '진미' 부분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진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나) 그런데 선출원서비스표 2 '진미'는 도형인 ' 부분과 문자인 '진미'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 도형인 ' 부분은 과일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인 '진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 2는 모두 '진미'로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호칭,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3) 대비결과의 종합

위 (1), (2)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 모 2는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지만, 모두 '진미'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은 선출원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과 그 제공되

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 판단

가. 예비적 판단의 이유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이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 중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

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참조).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상표를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 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 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는 일단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어야 할 것이고 특정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해 왔고 그 지역방송 또는 신문 등에 선전광고를 해 왔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다른 상표에 대한 장기간의 선전광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상표가 같은 법 제6조 제2 항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 22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 (1) 갑 제7 내지 6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1996. 4. 13.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5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다.
- (나) 원고의 위 사업장은 2005. 12. 19. 에스비에스방송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의 '튀김의 달인'편에 방송되었고, 2008. 11. 3. 에스비에스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으며, 2010. 8. 27. 케이비에스방송 '생생정보통' 프로그램에 방송되었고, 2010. 12. 29. 케이비에스방송 '생방송 오늘'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으며, 2012. 4. 20. 케이비에스방송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 방송되었고, 2012. 5. 1. 'CHANNEL 관찰카메라 24시간'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으며, 2012. 6. 15. 케이비에스방송 'VJ특공대' 프로그램에 방송되었다. 또한 원고의 위 사업장을 소개하는 다수의 글들이 2006년 이후각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에 게재되었고, 수원팔달시장의맛집을 소개하는 책자와 인터넷신문들에도 원고의 위 위 사업장을 소개하는 글들이 실렸다.
- (다) 원고의 위 사업장은 2006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92,000,000 원, 2006년 하반기 매출과세표준이 217,715,743원, 2007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이 290,765,882원, 2007년 하반기 매출과세표준이 237,509,644원, 2008년 상반기 매출과 세표준이 270,635,477원, 2008년 하반기 매출과세표준이 397,723,512원, 2009년 상반 기 매출과세표준이 509,037,967원, 2009년 하반기 매출과세표준이 556,659,523원, 2010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이 679,813,167원, 2010년 하반기 매출과세표준이 793,209,651원, 2011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이 871,906,409원, 2011년 하반기 매출과

세표준이 750,124,146원에 달하였다.

- (라) 사단법인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이 2013. 5.경 작성한 '수원지역 통닭시장매출 분석 및 진미통닭 매출액 비교분석'에 따르면 원고의 '진미통닭'은 수원지역 내의통닭음식점별 브랜드 인지도에서 보통 이상으로 안다는 비율이 87.7%로 동일한 상권에 위치한 통닭집들인 '장안통닭(63.8%)', '매향통닭(62.5%)', '용성통닭(69.7%)' 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한 '비비큐(88.1%)', '곱네치킨(84.1%)', '교촌치킨(84.3%)' 등과 비교하더라도 수원지역내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고의 '진미통닭'의 월 평균 추정매출액은 수원지역내 타 후라이드/양념치킨 업종의 월 평균 추정매출액의 약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전 약 15년간 사용한 결과, 수원지역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판단기준에 의하면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결쳐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출원전 상당기간 사용한 결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내규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위 상표심사기준의 단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통닭과 같이 전국적으로 판매, 유통, 소비되는 상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상표와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도 마땅히 전국적인 범위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에 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염호준

판사 이다우